

의안번호	2200400
의 퇴 인	강유정의원
회 답 일	2024. 6. 18.
추계번호	24C0812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3항 (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)	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둠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제3항 (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
(안 제20조제3항)
 -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는 2023년 1월 1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임
 - － 위원회 구성 후 2023년에 전체위원회 12회, 분과위원회 30회를 개최하였고,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024년 2억 2,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[표]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현황

구 분	내 용
위원회 구성	- 위원 12명(2023. 1.26. 위촉) - 3개 분과 구성하여 운영(권리보장 1분과, 권리보장 2분과,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분과)
위원회 실적	- 2023년 기준 전체위원회 12회, 분과위원회 30회 개최
위원회 운영 예산	- 2024년 기준 228백만원 (회의 운영비 101백만원, 법률 검토 및 홍보 등 운영비 100백만원, 불공정 관행 조사 등 출장비 27백만원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현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담당하고 있음
 -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조사 등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(팀장 1명, 사무관 3명, 주무관 4명)이 담당하고 있고,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‘예술인신문고’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되고, 기존의 사무처리 담당 조직보다 인력 등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확대될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 조직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위원회 운영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, 기존의 사무처리 담당 조직을 활용하여 사무국을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